

작성방법

- ※ 등록기준지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※ 주민등록번호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- ①란 :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란은 부(父)가 인지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
 - : 태아를 인지하는 경우: 성명(한글)란에 “임신 ○개월 중의 태아”라고 기재하되,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까지 기재합니다.
 - :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③란 : 인지재판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
 - : 조정성립,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,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“인지판결확정일자” 아래의 () 안에 “조정성립”, 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” 또는 “화해성립”, “화해권고 결정확정”이라고 기재하고, “연월일”란에 그 성립(확정)일을 기재합니다.
- ④란 : 인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동의자인 성년후견인이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
 - ※ 다만 2018. 6. 30.까지는 인지가 금치산자인 경우 동의자인 후견인이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
- ⑤란 : 피인지자에 대한 친권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
 - : 지정일자 - 협의에 의한 경우→협의일자, 법원의 재판에 의한 경우→재판 확정일자
 - : 지정원인 - 법원의 재판에 의한 경우에는 ()안에 그 재판법원명을 기재합니다.
- ⑥란 :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의 성·본은 부의 성·본을 따라 변경됩니다. 다만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·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⑦란 :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 - 피인지자가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사유
 - 사망한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사망연월일, 그 직계비속의 성명, 출생연월일 및 등록기준지
 - 피인지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(한글한자 병기), 출생연월일, 부모성명, 피인지자와의 관계
 - 유언인지의 경우 그 취지 및 유언집행자의 취임연월일
 -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혼인의 출생자에 대하여 한국법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신고할 경우 준거법소속국명, 준거법과의 관련사유(예: 준거법-한국, 자녀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)
- ⑨란 : 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 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첨부서류

1.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.
 - 인지판결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.
 - 화해성립이나 조정성립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(조정조서)등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합니다(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).
- ※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2. 피인지자의 출생당시 모(母)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(피인지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,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피인지자의 출생 당시 유부녀(有夫女)가 아니었음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보증서).
3. 친권자지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1통(다음 중 그 지정원인에 따라 해당 서면 첨부).
 - : 협의에 의한 지정- 협의서, : 법원의 결정에 의한 지정-친권자지정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
4. 유언서등본(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) 1통.
5. 인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: 성년후견인의 동의서(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“동의자”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)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
 - ※ 다만 2018. 6. 30.까지는 인지가 금치산자인 경우 후견인의 동의서(다만 동의한 후견인이 “동의자”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)를 첨부해야 합니다.
6. 인지가 외국인인 경우
 - 한국 방식에 의한 인지: 임의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
재판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
 - 외국 방식에 의한 인지: 인지증서 등본 및 국적 증명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 각 1부
7. 법원이 성·본계속사용을 허가한 경우 - 성·본계속사용허가심판서 등본 1부.
성·본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 - 협의서(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2 양식 참조) 1부.
8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]
 - ① 임의인지의 경우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 - 신고인 불출석, 제출인 출석의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)
 - 우편제출의 경우 :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)
 - ② 재판상 인지의 경우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 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 -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: 신분증명서 사본
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8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9.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혼인의 출생자에 대하여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면을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.
 -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과 인지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1통
예: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
 -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 1통
 - 부(父)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1통